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

판 결

사 건 2018가단50695 배당이의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피 고 1. A

2. [redacted]시

3. B

4. C단체

5. D 주식회사

6. E

변 론 종 결 2018. 10. 26.

판 결 선 고 2018. 11. 23.

주 문

1.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. 1. 17. 작성한 배당표 중,

가. ①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,979,673원, ② 피고 C단체에 대한 배당액 1,432,755원, ③ 피고 D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4,819,478원, ④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9,037,571원, ⑤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9,885,321원을 각 삭제하고,

나. 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,638,652원을 71,506,763원으로, ② 원고에 대한 배당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액 37,421,610원을 90,708,297원으로 각 경정한다.

2. 원고의 피고 평택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,

가. 원고와 피고 [redacted]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

나. 원고와 피고 A, B, D주식회사,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

다. 원고와 피고 C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. 1. 17. 작성한 배당표 중,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,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,638,652원을 72,293,332원으로, 37,421,610원을 91,277,188원으로 각 경정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채권

원고는 망 G(2013. 7. 16. 사망)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① 305,939,491원 및 위 돈 중 305,939,2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(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1301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, 이하 '원고의 제1채권'이라 함), ② 285,395,124원 및 위 돈 중 285,394,0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(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5254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, 이하 '원고의 '제2채권'이라 함) 각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나.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의 진행내역

(1) 원고는 2017. 3. 28.경 이 법원 F로 망 G 소유의 [redacted]시 H 및 I, [redacted]시 J 및 K 부동산(이하 '망 G 소유 부동산'이라 함)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2017. 3. 29.경 망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얻었다.

(2) 이후 망 G 소유 부동산은 제3자에게 523,700,000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었고, 이 법원은 2018. 1. 17.경 배당할 금액 516,631,072원 중, ① 1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망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2016년분 및 2017년분 재산세(당해세) 합계 1,355,460원 전액을, ② 2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B에 대하여 9,979,673원(2014. 2. 3.자 가압류집행채권자, 배당률 14.26%)을, ③ 2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C단체에 대하여 1,432,755원(2014. 1. 16.자 가압류집행채권자, 배당률 15.75%)을, ④ 2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D주식회사에 대하여 34,819,478원(2013. 9. 4.자 가압류집행채권자, 배당률 14.26%)을, ⑤ 2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A에 대하여 39,037,571원(2016. 11. 1.자 가압류집행채권자, 배당률 4.12%), ⑥ 2순위 배당권자로서 피고 E에 대하여 9,885,321원(2013. 10. 15.자 가압류집행채권자, 배당률 4.12%)을, ⑦ 2순위 배당권자로서 원고의 제1, 2채권에 대하여 29,638,652원(배당요구 일반채권자, 배당률 14.26%) 및 37,421,610원(신청채권자, 배당률 14.26%)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.

다. 원고의 배당이의 진술 및 이 사건 소제기

한편, 원고는 2018. 1. 17.경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, 2018. 1. 23.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【인정근거: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,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나 2, 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변론 전체의 취지】

2. 원고의 피고 A, B, C단체, D주식회사,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, B, C단체, D주식회사, E의 배당권원이 된 각 가압류는 모두 망 G이 사망한 2013. 7. 16.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, 위 피고들의 각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고, 따라서,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모두 삭제되고 그 동액상당의 금액 합계 95,154,798원(9,979,673원 + 1,432,755원 + 34,819,478원 + 39,037,571원 + 9,885,321원)은 원고의 제1, 2채권에 그 액수에 안분하여 41,868,111원(95,154,798원 × 44%), 53,286,687원(95,154,798원 × 56%)가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.

나. 결국,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의 제1채권에 관하여는 71,506,763원(29,638,652원 + 41,868,111원), 원고의 제2채권에 관하여는 90,708,297원(37,421,610원 + 53,286,687원)으로 경정되어야 한다.

3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 역시 망 G의 사망 이후인 2014. 2. 19.자로 압류집행된 조세채권에 기한 것이고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권원이 된 위 압류도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 1,355,460원도 삭제되고, 동액 상당이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추가되어야 한다.

나. 판 단

○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을나 2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[redacted]시는 망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2. 19.자로 압류집행한 일반 조세채권에 기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24

위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, 2016년 및 2017년 망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만으로 1,355,4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, 배당법원은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하여 위 당해세 1,355,460원을 1순위로 배당한 사실이 인정된다.

○ 즉, 배당법원의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1,355,460원의 배당은 무효인 2014. 2. 19. 자 압류에 기한 것이 아니라, 당해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배당권원으로 하여 배당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하고,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A, B, C단체, D주식회사,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, 이 사건 배당경위 및 피고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C단체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복